Ⅵ. 부 수 시 설 물

《 적용요령 》

■ 부수시설물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제6호 규정에 의한 개수 중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20%를 적용한다.

1. 엘리베이터

1. 용 어 정 의

엘리베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에 의해 아래위로 운반하도록 되어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종 류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1) 교류기어드(AC-2) : 60m/분이하 중속으로서 저속브레이크로 제어되는 방식
2) 직류기어드(DC-GD) : 75~105m/분의 중속으로서 감속기에 의하여 제어 정지하는 방식
3) 직류기어레스(DC-GL) : 120m/분 이상의 고속용으로 고층빌딩의 승용 엘리베이터에 많이 사용되고 완전자동으로 제어되는 방식
4) 인버터 :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가변 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을 말하며, VVVF제어라고도 한다

- 기어드(AC-GD) : 승강기의 진동소음이 크고, 대용량 고출력을 내는데 부적합하고 기어로 제어되는 방식
- 기어레스(AC-GL) : 승강기의 진동소음이 적으며, 대용량 고출력을 내는데 적합하고 주파수로 제어되는 방식
- MRL(Machine Roomless Elevator) :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교류형(AC)으로서 저속 및 중속 브레이크로 정지되는 제어방식이며 속도에 따라 분당 20m, 30m, 45m, 60m으로 나누어짐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교류형(AC)으로서 분속 20m~60m가 있음(2,000㎏은 소·중형차용, 2,500㎏은 대형차용)

라. 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1톤미만의 소형화물(서적,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마. 병원용 엘리베이터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승 객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화 물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덤 웨 이 터	18년	정 액 법	10%	0.05	
병 원 용 엘리베이터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단위 : 천원)

형 / 속도 및 층별		교류기어드형(AC-2)			직류기어드형(DC-GD)		
		30m/분 6층기준	45m/분 6층기준	60m/분 6층기준	75m/분 6층기준	90m/분 10층기준	105m/분 15층기준
기 준 인 원		10	10	10	10	10	10
엘 리 베 이 터	상	21,920	24,320	26,525	36,162	40,320	62,428
	하	21,304	23,258	23,923	19,828	28,970	36,320
1 층 증 감 시		878	878	946	1,077	1,081	1,081
1 인 증 감 시		216	216	275	372	584	584

(단위 : 천원)

형 / 속도 및 층별		직 류 기 어 레 스 형 (DC-GL)							
		120m/분 15층기준	150m/분 15층기준	150m/분 25층기준	180m/분 25층기준	210m/분 25층기준	240m/분 25층기준	300m/분 26층기준	360m/분 25층기준
기 준 인 원		15	15	18	18	30	30	30	30
엘 리 베이터	상	80,320	119,328	122,228	126,320	144,874	168,320	279,212	297,678
	하	64,320	72,320	96,212	99,282	115,148	-	-	-
1 층 증감시		1,080	1,200	1,320	1,560	1,786	1,890	2,029	2,160
1 인 증감시		725	750	776	803	883	910	936	963

(단위 : 천원)

형 / 속도 및 층별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D)				
	60m/분 6층기준	90m/분 6층기준	105m/분 6층기준	120m/분 15층기준	150m/분 25층기준
기 준 인 원	11	11	11	15	18
엘리베이터	31,416	34,016	37,408	80,688	102,136
1층 증감시	1,071	1,190	1,190	1,512	1,620
1인 증감시	611	611	611	611	611

(단위 : 천원)

형 / 속도 및 층별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180m/분 25층기준	210m/분 25층기준	240m/분 25층기준	300m/분 25층기준	360m/분 25층기준
기 준 인 원	18	30	30	30	30
엘리베이 터	167,220	200,392	229,520	350,576	397,636
1층 증감시	2,160	2,264	2,264	2,264	2,264
1인 증감시	900	900	900	900	900

(단위 : 천원)

형 / 속도 및 층별	Machine Roomless Elevator			
	45m/분 6층기준	60m/분 6층기준	90m/분 6층기준	105m/분 6층기준
기준인원	8	11	11	11
엘리베이터	26,944	34,656	36,704	51,864
1층증감시	1,071	1,190	1,190	1,428
1인증감시	611	611	611	611

※ 상·하의 구분
- 상 : 티센크루프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트(주), LG-OTIS(주) 등의 국내 유명 메이커나 외국산 제품
- 하 : 기타 국내 조립품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단위 : 천원)

형 / 속도		교류형 (AC)			
		20m/분	30m/분	45m/분	60m/분
1,000 kg 5층 기준	상	27,744	34,504	36,336	39,592
	하	24,720	26,840	29,181	31,132
1층증감시		1,800	1,800	1,800	1,800
500 kg 증감시		1,528	1,528	1,528	1,528

※ 상·하 구분
- 상(上) : 외국기술 제휴한 국내제품 및 외국상품
- 하(下) : 기타 제품

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단위 : 천원)

형별 / 중량별 / 속도별		교류형 (AC)							
		2,000kg				2,500kg			
		20m/분	30m/분	45m/분	60m/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5층 기준	상	31,365	35,399	36,956	38,720	30,848	39,913	45,136	50,720
	하	25,187	28,629	31,240	33,600	26,000	30,149	33,040	39,920
1층 증감시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1,875

※ 상·하 구분
- 상(上) : 외국기술 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상품
- 하(下) : 기타 국내 조립품

라. 덤웨이터

(단위 : 천원)

형 별 / 중량별 / 속도별 / 층 별	교 류 형 (AC)				
중량별	80㎏	100㎏	150㎏	200㎏	300㎏
속도별	20m/분	20m/분	20m/분	20m/분	2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 리 베 이 터	12,174	12,210	12,288	12,366	12,528
1 층 증 감 시	1,040	1,040	1,040	1,040	1,040

마. 병원용 엘리베이터

(단위 : 천원)

형 별 / 중량별 / 속도별 / 층 별	교 류 형 (AC)			
중량별	750㎏		1,000㎏	
속도별	30m/분	60m/분	30m/분	6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 리 베 이 터	21,582	25,256	24,080	30,512
1 층 증 감 시	1,008	1,163	1,008	1,163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인원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톤수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다. 자동차용·병원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별증감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1 ≫

○ 12층 건물에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2010년도에 설치한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Machine Roomless Elevator 90m/분 15인승 상)

- 적용방법 : (기준과표+층별증감액+인원증감액)×잔가율
- 90m/분 6층 기준가격 : 36,704,000원 ····· A
- 6층 증가기준가격 : 1,190,000원×6층=7,140,000원 ····· B
- 4인 증가기준가격 : 611,000원×4인=2,444,000원 ····· C
- 잔가율 : 1-(0.05×5년)=0.75
- 기준가격 합계 : A+B+C = 36,704,000+7,140,000+2,444,000=46,288,000원
- 시가표준액 : 46,288,000원×0.75=34,716천원

≪ 산출예시 2 ≫

○ 2011년도에 7층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1,000㎏ 45m/분 상)

- 1,000㎏ 45m/분 5층 기준가격 : 36,336,000원
- 2층 증가가격 : 1,800,000원×2층=3,600,000원
- 잔가율 : 1-(0.05×4년)=0.80
- 기준가격=36,336,000+3,600,000=39,936,000원
- 시가표준액=39,936,000원×0.80=31,949천원

≪ 산출예시 3 ≫

① 2009년도에 5층 건물에 덤웨이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규격 및 형식 : 100㎏ 20m/분)

- 100㎏, 20m/분 4층 기준가격=12,210,000원
- 1층 증가기준가격 : 1,040,000원
- 잔가율 : 1-(0.05×6)=0.7
- 기준가격 : 12,210,000+1,040,000=13,250,000원
- 시가표준액 : 13,250,000원×0.7=9,275천원

② 2008년도에 8층 병원에 중량 750㎏ 속도 30m/분의 병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750㎏ 30m/분 4층 기준가격 : 21,582,000원
- 4층 증가기준가격 : 1,008,000×4층＝4,032,000원
- 잔가율 : 1－(0.05×7)＝0.65
- 기준가격 : 21,582,000＋4,032,000＝25,614,000원
- 시가표준액 : 25,614,000원×0.65＝16,649천원

2. 에스컬레이터

1. 용 어 정 의

에스컬레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설치한 자동운반 시설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2. 종 류

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800㎜(800형)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수평보행기는 유효폭에 따라 1,200㎜(1,200형)과 1,000㎜(1,000형) 및 800㎜(800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8년	정액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가. 에스컬레이터

(단위 : 천원)

폭 \ 층 고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상	50,194	55,753	64,451	79,968
	하	36,028	44,486	52,000	69,089
0.1m 당 증 감 시		666	701	811	815
1,200㎜이하	상	55,541	61,844	70,626	87,120
	하	36,147	42,862	49,578	63,010
0.1m 당 증 감 시		618	651	775	748

※ 상·하의 구분
- 상 : 외국기술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산제품
- 하 : 기타제품

나. 수평보행기(AUTO WALKER 또는 MOVING WALKER)

(단위 : 천원)

폭 \ 층 고		3m이하	4m이하	5m이하	7m이하
800㎜이하	기준가격	72,040	81,616	91,473	110,511
	0.1m당 증감시	910	958	986	952
1,000㎜이하	기준가격	74,969	84,755	94,889	114,173
	0.1m당 증감시	930	979	1,013	964
1,200㎜이하	기준가격	79,654	89,778	100,397	120,159
	0.1m당 증감시	962	1,012	1,062	988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층고 1m증감 시 기준가격 × 길이)]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폭 1,200㎜ 에스컬레이터 층고 7m를 구입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경과연수 : 5년
- 잔가율 : 1－(0.05×5년)＝0.75
- 기준가격 : 87,120,000원
- 시가표준액 : 87,120,000원×0.75＝65,340천원

○ 2011년도에 폭 1,000㎜, 층고 7m의 오토워커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경과연수 : 4년
- 잔가율 : 1－(0.05×4년)＝0.80
- 기준가격 : 114,173,000원
- 시가표준액 : 114,173,000원×0.80＝91,338천원

3. 기타 승강시설

1. 용 어 정 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옥내에 설치한 시설

2. 종 류

가.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다.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라. 2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마. 다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바. 승강기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사.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아. 평면왕복식주차장치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자. 특수형식주차장치

제가호 내지 제아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최종연도 잔가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가격표(1대당 기준가격)

가.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상	3,779	3,072
하	3,480	2,782

나.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 단	4 단	5 단	6 단
상	3,751	3,471	3,202	2,909	2,702
하	3,379	3,128	2,955	2,785	2,644

다. 2단식(1단식포함)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상	2,721	2,945	3,079
하	2,208	2,516	2,929

라.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3 단	4 단	5단 이상
상	3,209	3,058	2,701
하	2,746	2,654	2,348

마. 승강기식 및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상	3,361	1,793
하	3,022	1,614

바. 평면왕복식

(단위 : 천원/대)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상	5,087	4,490	4,263	4,042	3,800	3,733	3,497	3,256
하	3,960	3,784	3,608	3,547	3,468	3,311	3,098	2,923

사. 기타 주차장치(특수형식 주차장치포함)

위 종류 이외의 주차시설은 과세권자가 수시 조사 결정한 가격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1대당) × 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1. 2009년도에 35대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직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경과연수 : 6년
   - 기준가격(1대당) : 3,779,000원
   - 잔가율 : 1－(0.05×6)＝0.70
   - 시가표준액 : 3,779,000×35대×0.70＝92,586천원

2. 2010년도에 평면왕복식의 8단 300대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경과연수 : 5년
   - 기준가격(1대당) : 3,497,000원
   - 잔가율 : 1－(0.05×5)＝0.75
   - 시가표준액 : 3,497,000×300대×0.75＝786,825천원

4. 휠체어리프트

1. 용 어 정 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 또는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시설물로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2. 종 류

가.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으로 중량에 따라 225㎏와 300㎏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최종연도 잔가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가격표

가.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단위 : 천원/대)

구 분	5M 기준가격	5M 초과 1M증가시마다 기준가격
225㎏, 9m/분	16,657	576
300㎏, 9m/분	25,547	779

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단위 : 천원/대)

구 분	1M 기준가격	1M 초과 1M증가시마다 기준가격
340㎏, 7m/분	17,367	1,841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M 증가 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225㎏, 9m/분) 5m를 구입 설치한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경과연수 : 5년
- 잔가율 : 1－(0.05×5년)＝0.75
- 기준가격 : 16,657,000원
- 시가표준액 : 16,657,000원×0.75＝12,493천원

○ 2009년도에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340㎏, 7m/분) 3m를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5
- 경과연수 : 6년
- 잔가율 : 1－(0.05×6년)＝0.70
- 기준가격 : 17,367,000원
- 1M 증가시 기준가격 : 1,841,000원 × 2M = 3,682,000원
- 시가표준액 : (17,367,000원+3,682,000원)×0.70＝14,734천원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1. 용 어 정 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5년	정액법	10%	0.06	

3. 기 준 가 격 표

(단위 : 천원)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20kw	10,977	8,820	65	48
	42kw	12,403	9,976	44	177
	48kw	12,668	11,156	131	77
	75kw	16,583	13,236	46	107
	115kw	18,617	17,984	141	118
	145 kw	23,337	21,538	78	113
	275 kw	34,948	36,236	27	14
	300 kw	36,725	36,576	97	125
	365 kw	42,349	44,728	99	136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400 kw	46,185	49,472	159	67
	450 kw	54,151	52,800	104	80
	500 kw	59,369	56,800	162	248
	600 kw	77,399	84,328	203	135
	750 kw	107,816	104,504	188	140
	1,000 kw	154,898	143,544	176	180
	1,250 kw	199,009	188,440	162	159
	1,500 kw	244,013	232,664	212	168
	2,000 kw	350,170	316,939	191	152

4.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kw당 증가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자동식발전기(300kw)를 2012년도에 설치한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0.06×3)＝0.82
- 기준가격 : 36,725,000원
- 시가표준액 : 36,725,000원×0.82＝30,115천원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 용 어 정 의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이란 난방용이나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시설물로 보지 아니한다.

2. 종 류

가.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냉·난방 방식별로 직접증기, 직접온수, 온풍(온풍로식, 코일식), 냉·난방(중앙닥트식, 유니트식), 전기온돌, 전기히트펌프, 가스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로 구분한다.

나.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공동탕(대중탕), 가족탕(독탕), 한증막, 증기탕, 사우나탕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4. 기 준 가 격 표

가. 난방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단위 : 원)

냉 · 난 방 방 식 별	㎡ 당 기준가격
직 접 증 기 난 방 설 비	34,178
직 접 온 수 난 방 설 비	33,843
온 풍 난 방 설 비 (온 풍 로 식)	26,596
온 풍 난 방 설 비 (코 일 식)	25,141
냉 · 난 방 (중 앙 닥 트 식)	59,355
냉 · 난 방 (유 니 트 식)	55,155
전 기 온 돌 난 방 설 비	36,018
전 기 히 트 펌 프	35,868
가 스 히 트 펌 프	59,030
지 열 히 트 펌 프	93,326
공 기 열 히 트 펌 프	37,331

○ 건물의 용도별·면적별 부과지수표

구분 / 용도별	건물의 시설연면적(㎡)									
	330㎡ 이하	660㎡ 이하	990㎡ 이하	1,650㎡ 이하	2,640㎡ 이하	3,300㎡ 이하	6,600㎡ 이하	9,900㎡ 이하	16,500㎡ 이하	16,500㎡ 초과
사무실	1.30	1.20	1.10	1.10	0.97	0.95	0.95	0.95	0.90	0.85
은행	1.35	1.30	1.30	1.10	1.00	1.00	0.97	0.97	0.95	0.90
병원(종합)	1.40	1.37	1.37	1.30	1.25	1.25	1.20	1.20	1.00	0.95
병원(단과)	1.30	1.27	1.25	1.20	1.10	1.10	1.00	1.00	0.97	0.95
백화점,점포	1.25	1.20	1.10	1.10	1.00	1.00	1.00	0.97	0.95	0.80
호텔	1.40	1.37	1.30	1.30	1.25	1.20	1.20	1.10	1.00	0.95
여관	1.30	1.25	1.20	1.10	1.05	1.00	1.00	1.00	1,00	1.00
다방,식당	1.40	1.35	1.30	1.25	1.00	1.00	1.00	1.00	1.00	1.00
공장평균	1.30	1.20	1.00	1.00	0.95	0.90	0.80	0.80	0.75	0.75
제과점	1.40	1.35	1.30	1.25	1.00	1.00	1.00	1.00	1.00	1.00
방송국	2.00	1.80	1.70	1.60	1.60	1.60	1.50	1.50	1.40	1.20
극장	1.40	1.35	1.30	1.25	1.20	1.10	1.00	1.00	0.90	0.90
학교	1.30	1.20	1.05	1.00	1.00	0.95	0.95	0.85	0.80	0.80
연구소	1.30	1.25	1.20	1.15	1.10	1.00	1.00	0.95	0.90	0.90
예식장	1.30	1.20	1.10	1.00	0.97	0.95	0.95	0.95	0.95	0.95
별장	1.30	1.25	1.2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체육관	1.40	1.35	1.30	1.25	1.20	1.00	1.00	1.00	0.90	0.90
동(식)물온실	1.40	1.35	1.30	1.25	1.20	1.10	1.00	1.00	0.90	0.90

나.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단위 : 천원)

방식별	㎡당 기준가격	방식별	㎡당 기준가격
공동탕	54	증기탕	70
한증막	54	사우나탕	76
가족탕	67		

○ 면적별 부과지수표

연면적	165㎡이하	330㎡이하	660㎡이하	990㎡이하	990㎡초과
지수	1.20	1.00	0.95	0.90	0.8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부과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1 ≫

○ 2010년도에 연면적 1,650㎡의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당 사무실의 냉·난방은 중앙닥트식 냉·난방시설이다. 2015년도 냉·난방시설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경과연수 5년 : 0.06×5년=0.30 따라서 잔가율은 1-0.30=0.70
- 1,650㎡ 기준가격 : 59,355원×1,650㎡=97,935,750원
- 부과지수 적용 : 97,935,750원×1.10(부과지수)=107,729,325원
- 시가표준액 : 107,729,325원×0.70=75,411천원

≪ 산출예시 2 ≫

○ 연면적 660㎡의 대중목욕탕이 2011년도에 신축되었고 660㎡ 중 330㎡은 잡화상점으로 임대되고 실제 대중목욕탕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330㎡이다. 2015년도 욕탕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0.06×4)=0.76
- 대중탕 기준가격(㎡당 54,000원) : 54,000원×330㎡=17,820,000원
- 부과지수 적용 : 17,820,000원×1.00(부과지수)=17,820,000원
- 시가표준액 : 17,820,000원×0.76=13,543천원

7. 7,560㎉급 이상의 에어컨

1. 용 어 정 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습도 등을 조절하는 7,560kcal (2.5R/T) 이상의 에어컨으로서 중앙조절식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한다.

2. 종 류

1) 중앙집중식 에어컨에 한하며 1실단위의 에어컨은 제외한다.

2) 제품의 구분 : 공냉식, 수냉식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5년	정액법	10%	0.06	

4. 기 준 가 격 표

(단위 : 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3R/T 9,072kcal (1R/T 증가시)	2,770(635)	2,915(638)	
5R/T 15,120kcal (1R/T 증가시)	4,180(314)	4,333(308)	
7.5R/T 22,680kcal (1R/T 증가시)	4,966(209)	5,103(229)	
10R/T 30,240kcal (1R/T 증가시)	5,547(419)	5,675(343)	
15R/T 45,360kcal (1R/T 증가시)	7,871(235)	7,581(269)	

(단위 : 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20R/T 60,480kcal (1R/T 증가시)	9,175(936)	8,926(501)	
25R/T 75,600kcal (1R/T 증가시)	13,856(692)	11,432(499)	
40R/T 120,960kcal (1R/T 증가시)	25,389(262)	19,746(181)	
50R/T 151,200kcal (1R/T 증가시)	28,012(212)	21,559(240)	
60R/T 181,440kcal (1R/T 증가시)	30,129(756)	23,960(526)	
80R/T 241,920kcal (1R/T 증가시)	46,923(511)	34,480(156)	
100R/T 302,400kcal (1R/T 증가시)	57,152(88)	37,600(134)	
120R/T 378,000kcal (1R/T 증가시)	58,905(705)	40,275(321)	
150R/T 453,600kcal (1R/T 증가시)	82,390(491)	49,893(347)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R/T 증가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2년에 70R/T 211,680kcal의 공냉식 에어컨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5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0.06×3)＝0.82
- 60R/T 181,440kcal 기준가격 : 30,129,000원
- 10R/T 30,240kcal 증가시 기준가격 : 7,560,000원
- 기준가격 합계 : 30,129,000＋7,560,000＝37,689,000원
- 시가표준액 : 37,689,000원×0.82＝30,905천원

8. 부착된 금고

1. 용 어 정 의

부착된 금고란 건물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으로서, 주로 건물내부에 설치하며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종 류

1) 편개형 : 금고문이 1짝인 경우

2) 양개형 : 금고문이 2짝인 경우

3) 크랭크형 : 금고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음

3. 내용연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단위 : 천원)

규 격		편개형 후면 철판부	편개형 후면 유리부	양개형 후면 철판부	양개형 후면 유리부	크랭크 형후면 철판부	크랭크 형후면 유리부	크랭크 형스테 인레스	스텐전 동식슬 라이딩	스텐 편개형
750 千㎤	기준과표	3,192	3,573	2,725	3,079	3,588	3,988	5,690	6,229	5,140
	10千㎤ 증감과표	5.7	6.1	3.5	3.6	4.4	4.3	6.6		
875 千㎤ 이상	기준과표	3,901	4,336	3,163	3,526	4,142	4,520	6,521	7,227	5,907
	10千㎤ 증가과표	4.5	3.9	3.5	3.4	4.3	4.6	6.6		
1,000 千㎤ 이상	기준과표	4,463	4,825	3,595	3,949	4,674	5,096	7,352	8,248	6,664
	10千㎤ 증가과표	4.4	5.3	3.5	4.1	4.5	4.7	6.3		
1,085 千㎤ 이상	기준과표	4,833	5,278	3,893	4,299	5,058	5,494	7,884	8,950	7,158
	10千㎤ 증가과표	4.5	4.5	6.2	4.7	5.3	4.6	5.3		
1,170 千㎤ 이상	기준과표	5,219	5,663	4,421	4,698	5,512	5,887	8,336	9,652	7,646
	10千㎤ 증가과표	4.5	4.6	4.4	4.1	4.7	4.6	6.1		

5. 조 사 방 법

가. 금고문의 폭, 넓이, 두께를 조사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문이 1짝일 경우 편개형, 2짝일 경우 양개형으로 구분

나. 문이 열렸을 때 문뒷면이 유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리부, 철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철판부

다. 크랭크형은 전부 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고 크랭크형 스테인레스는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증감시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설치된 금고문의 폭 1,800㎜, 높이 2,100㎜, 두께 300㎜의 스텐전동식슬라이딩 금고의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 잔 가 율 : 1－(0.05×5)＝0.75
- 규　　격 : 1,800×2,100×300＝1,134천㎤
- 1,085천㎤ 기준가격＝8,950,000원
- 시가표준액 : 8,950,000×0.75＝6,713천원

9. 교 환 시 설

1. 용 어 정 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로서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

2. 종 류

자동식 교환기, 인터폰, 전화기, 간이교환설비

3.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 종류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자 동 식 교 환 기	10년	정 액 법	10%	0.09	
인 터 폰	5년	〃	10%	0.18	
전 화 기	5년	〃	10%	0.18	
간 이 교 환 설 비	10년	〃	10%	0.09	

4. 기 준 가 격 표

가. 자동식 교환기

(제조회사 : 삼성반도체통신, 금성통신, 대우통신, 동양정밀, 대한통신 등)

(단위 : 천원)

규격별	기준가격	사선1회선 증감시 기준가격		비 고
		1회선감소시	1회선증가시	
50회선	7,672	134.4	153.6	

나. 인 터 폰

(단위 : 천원)

형 식 별	규 격	기준가격
상 호 식	6 회 선	25
	10 회 선	28
연 립 식	12 회 선	48
	18 회 선	51
	24 회 선	56
연 립 비 화 식	12 회 선	51
	18 회 선	62
	24 회 선	66
모 자 식	10 회 선	49
	가선식(加線式)	46
전 자 식	6 회 선	18
	20 회 선	52
	30 회 선	57
	90 회 선	62

다. 전 화 기

(단위 : 천원)

형 식 별	기 준 가 격	비 고
공 전 식	18	
일 반 자 동 식	24	
일 반 버 튼 식	17	
자 동 응 답 기	58	
무 선 전 화 기	78	

라. 간이교환설비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교환설비(키폰, 비즈니스폰, 버튼 전화기)를 말하며, 구내선수가 40회선 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 형태별	품 명	규격(용량) 국 선	규격(용량) 사 선	기준가격 주 장 치	기준가격 사선1회선당 (사용량)
신 형	DCS-828	0	8	433	
	IPLDK-50	4	12	620	
	IPLDK-100	0	0	999	
	IPLDK-300	0	0	1,422	
	IPLDK-600	0	0	2,741	
	LDK-50	4	12	530	
	LDK-50	8	12	530	
	LDK-100	0	0	632	
	LDK-300	0	0	900	
	LDK-828	4	8	568	
	SKP 308	3	8	352	
	SKP 616	6	16	438	
	SKP 816	8	16	412	
	SKP 828	4	12	535	
	SKP 1640	16	40	2,116	
	SKP 48H-M	4	10	574	
	SKP 60H-M	4	13	598	
	SKP 820VMA	2(ISDN)	20	1,008	
	SKP - 180	0	0	1,112	
	SKP - 408	4	8	383	
	HKP 206	2	6	127	15.2
	OfficeServ 7400	0	0	2,999	37.6
	OfficeServ 7200	0	0	1,075	37.6
	OfficeServ 7070	4	12	803	22.4
	OfficeServ 7030	0	2	359	22.4
	IDCS 500P	0	0	968	44.8
	DCS-816i	4	4	576	26.4
	DCS-828	0	12	688	36
	IPLDK-828E	4	12	662	
	IPLDK-60	3	8	550	
	HTKP-616	4	8	567	17.6

(단위 : 천원)

구분 / 형태별 / 품명	규격(용량)		기준가격	
	국 선	사 선	주 장 치	사선1회선당 (사용량)
신 형 HTKP-820V	4	10	352	35.2
HTKP-824	4	12	476	28.8
HTKP-48HD	4	16	724	35.2
HTKP-66D	6	18	828	35.2
HTA-500			1,008	17.6
IPECS-100			1,232	
IPECS-300			3,360	
IPECS-600			4,480	
IPECS-MG10			1,120	
IPECS-MG30			2,800	

※ 주장치(Control Box)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경우에 한함.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자동식 교환기

시가표준액＝{기준가격(50회선)＋(1회선증감시 기준가격×회선수)}×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나. 인터폰

시가표준액 = (1대당기준가격 × 수량)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다. 전화기

시가표준액 = (1대당기준가격 × 수량)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라. 간이교환시설

시가표준액＝{주장치 기준가격＋(사선1회선당(사용량)기준가격×회선수)}×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사용연수)

≪ 산출예시 1 ≫

○ 2013년도 설치한 HKP 206형 교환설비의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국선 2, 사선 8임.

- 감가율 : 0.09
- 잔가율 : 1－(0.09×2)＝0.82
- 주장치 기준가격 : 127,000원 ····· A
- 사선증가시 기준가격 : 15,200원×2회선＝30,400원 ····· B
- 기준가격 합계 : A＋B＝127,000＋30,400＝157,400원
- 시가표준액 : 157,400원×0.82＝129천원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1. 용 어 정 의

구내 변전·배전시설이란 건물구내(울타리 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기를 받는 지점(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종 류

가. 구내 수전시설

한국전력공사나 구내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받은 후에 전압을 변경하여 구내로 배전하는 시설로서 구내에 설치한「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6호의 수전시설을 말한다. 다만, 수전용량(계약용량) 100KVA 이상 수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변압기

구내의 수전시설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한다. 다만, 변압기만을 교체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배전시설 일체를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가. 구내 수전시설”을 적용한다.

3. 조 사 방 법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 납입영수증에 기재된 계약용량을 조사 확인한다.

4.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고
구 내 수 전 시 설	15년	정액법	10%	0.06	
변 압 기	15년	〃	10%	0.06	

5. 기 준 가 격 표

가. 구내 수전시설

(단위 : 천원)

품 목 별	시 설 별	기준가격	비고
구내수전시설 공통적용	500KW이하 (100KVA 기준) 1 KVA 증가시 마다	18,092 33	
	500KW초과 (500KVA 기준) 1 KVA 초과마다	32,926 21	

※ W=전압(V)×전류(A)

나. 변압기

(단위 : 천원)

품 목	규 격 별	기준가격		1KVA증가시 기준가격		비고
		단 상	삼 상	단 상	삼 상	
변 압 기	50 KVA	2,926	4,819	22	35	
	100 KVA	4,155	6,790	11	15	
	150 KVA	4,757	7,537	7	12	
	200 KVA	5,109	8,126	4	16	
	250 KVA	5,352	8,913	9	11	
	300 KVA	5,800	9,525	7	13	
	350 KVA	6,181	10,167	7	12	
	400 KVA	6,565	10,819	15	13	
	500 KVA	8,107	12,065	12	19	
	600 KVA	9,331	14,196	14	11	
	750 KVA	11,496	15,886	13	11	
	1,000 KVA	14,705	18,633	7	12	
	1,500 KVA	18,283	24,800	9	8	
	2,000 KVA	22,649	29,149	8	14	
	2,500 KVA	26,411	36,160	8	13	
	3,000 KVA	30,236	43,440	10	17	
	4,000 KVA	39,739	62,748	6	10	
	5,000 KVA	46,179	74,244	8	22	
	6,000 KVA	54,155	98,893	8	13	
	7,500 KVA		121,251		15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구내 수전시설

시가표준액＝{기준가격＋(1KVA증가시 기준가격×증가수량)}×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나. 변압기

시가표준액＝{시설별기준가격＋(1KVA증감시 기준가격×증감수량)}×잔가율

≪ 산출예시 ≫

○ 2009년도 시설한 변압기의 경우 2015년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230 KVA, 삼상임.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0.06×6년)＝0.64
- 200 KVA(삼상)기준가격＝8,126,000원 ····· A
- 1 KVA당 증가시 기준가격 16,000×30KVA＝480,000원 ····· B
- 기준가격 합계 : A＋B＝8,126,000＋480,000＝8,606,000원
- 시가표준액 : 8,606,000원×0.64＝5,508천원

Ⅶ. 입　　목

1. 용 어 정 의

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을 말한다.
2) 지상의 과수란 지상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과수목을 말한다.
3) 임목이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4) 죽목이란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죽목을 말한다.

2. 용 어 해 설

가. 재적(材積) : 수목의 부피

나. 흉고(胸高) 직경 : 입목 상태에서 120㎝(사람가슴까지의 높이)높이 부분의 나무직경

다. 수고(樹高) : 나무의 지원부(地元部)에서 초두부(初頭部)까지 전체높이

라. 지원부(地元部) : 나무밑둥과 토지가 서로 맞닿는 부분

마. 초두부(梢頭部) : 나무위의 끝부분

바. 재장(材長) : 원목의 길이를 말하며, 원목이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일정한 크기(길이)로 절단해놓은 상태에 있는 나무를 말함.

사. 간재적(幹材積) : 나무 한본(1本)의 전체부피를 말함.

아. 산림경영기술자(山林經營技術者) :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자. 산림경영계획서(營林計劃書) : 모든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에 대한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서

차. 임지경계(林地境界) : 산(山)의 매필지마다의 경계를 말함.

카. 기설차도(旣設車道) :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로서 기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함.

타. 조수입(粗收入) : 주산물 평가액(생산량×농가평균 수취가격)과 주산물 생산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의 평가액을 합계한 총액

파. 경영비(經營費) :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투자한 일체의 비용

하. 경영비율(經營費律) : 1-(소득/조수입×100)

3. 종 류

가.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나. 유실수(총16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유자, 참다래, 자두, 매실, 호두,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밤

4. 시가 조사방법

1) 과수, 임목, 죽목을 수종, 수령, 지역별로 세분하고 구분하여 조사한다.

2) 산림목은 ㎥당 가격을 시장가역산법에 의한다.

3) 유실수는 10a당 과수별 작목에 따른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

4) 유실수의 수종별 총경영비, 표준재식주수를 조사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산림목

가. 재적(㎥)이 나타난 경우

시가표준액 = 재적 × ㎥당 단가

1) 재적 : 산림경영기술자가 직접조사, 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
2) ㎥당 단가 : 시장가역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나. 재적(㎥)을 직접 조사할 경우

시가표준액 = 간재적 × 본수 ×㎥당 단가

1) 총재적 : 간재적 × 본수
2) 간재적 : 흉고직경, 수고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림청 발행 재적표에서 찾음

■ 유실수

가.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 본당 기준가격 × 현실화율

나.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전년 시가표준액 × 현물가상승률

6.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가. 산림목

≪재적(㎥)이 나타난 경우≫

1)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를 과표에 적용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가 제출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으로 한다.
2) 그러나, 산림경영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재적을 직접조사 하는 경우≫

1)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여 산림청 발행 입목간재적표에서 입목재적을 구한다.
- 흉고직경은 지상 120㎝부위에서 2㎝단위로 측정하고 수고는 m단위로 조사하며 m이하는 절사한다.
- 재적 조견표에서 수종별, 지역별 구분에 의하여 간재적을 구한다.
- 재적 조견표에 수종별, 지역별,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입목은 유사수종 또는 유사지역을 적용한다.

2) ㎥당 단가는 종류에 따라 조사 결정한 ㎥당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산림목 시가표준액표(㎥당)

(단위 : 원)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적용가격	56,770	25,010	29,330	14,480	10,480

나. 유실수

1) **유령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가격결정

2)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평가

3) 위 기준에 따라 수령별 가격을 산출한 후 현실화율(7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유실수 중 일부 수종은 소득자료 통계 확인 등이 어려워 전년대비 2014.7월 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유실수 시가표준액표(본당)

(단위 : 원)

수령별 / 수종별	5년생 까 지	10년생 까 지	15년생 까 지	20년생 까 지	30년생 까 지	30년생 이 상
사과	12,310	38,510	64,800	75,190	68,890	32,290
배	19,920	62,750	91,550	91,080	76,230	43,230
복숭아	26,390	63,230	52,210	25,490	6,120	-
포도	23,730	42,650	24,150	10,510	-	-
감귤	5,830	9,990	15,520	18,230	16,580	8,890
단감	9,590	26,760	47,480	51,330	33,660	11,200
유자	5,140	38,640	46,580	31,060	13,260	-
참다래	23,300	61,940	79,240	80,660	68,560	18,760
자두	12,570	28,020	36,490	33,210	15,240	6,410
매실	10,510	25,780	33,990	29,750	12,700	4,550
호두	5,290	8,240	10,240	18,370	22,120	20,720
앵두	4,320	7,820	10,880	15,440	26,210	16,350
대추	4,270	5,600	9,310	13,020	9,940	7,770
살구	2,590	5,110	7,630	9,310	11,550	8,470
모과	910	2,100	3,640	6,510	6,650	5,670
밤	2,590	4,340	7,280	9,940	9,660	7,770

* 복숭아는 25년생까지

≪첨부자료≫

■ 산림목

≪시장가역산법≫

1. 시장가역산법 산정공식

시장가역산법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목가격에서 목재생산비용, 정상적인 기업이윤을 차감하여 산원에서의 입목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여,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x = f \times \left(\frac{a}{(1 + mp + r)} - b \right)$$

x : 단위재적당 입목가격(원/㎥)

f : 조재율(소수)

a :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원/㎥)

m : 자본회수기간(개월수)

p : 월이율(소수)

r : 기업이윤

b : 단위재적당 생산비〔벌출비, 운반비, 기타비용(원/㎥)〕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결정

(1) 조재율(f)

조재율(이용률)이란 입목을 벌채, 반출, 가공하여 생산되는 목재재적의 입목 간 재적에 대한 비율임.

[표1] 수종별 조재율

(단위 : %)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조재율	85	79	88	83	75

*국유림관리소의 평균자료, 산림청 예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

(2)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a)

한국임업진흥원 통계조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가격유통정보 등을 참작하여 2등급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단위:원/㎥)

수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가격	215,100	140,200	141,700	122,400	122,300

(3) 자본회수기간(m)

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은 산물수량 작업방법 및 반출량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3월을 적용함.

매각산물의 수량	자본회수기간	
	용재기준	신탄재기준
300㎥미만	0.5월	1월
300㎥ ~ 500㎥	1월	2월
500㎥ ~ 1,000㎥	2월	3월
1,000㎥ ~ 2,000㎥	3월	4월
2,000㎥ ~ 3,000㎥	4월	5월
3,000㎥ ~ 5,000㎥	5월	6월
5,000㎥ 이상	5월	6월

(4) 월 이율(p)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14년 7월)를 기준하여 연4.41% 적용함.

이율	월	적용
4.41%	12	0.00368

(5) 기업이윤(r)

순이익, 결손률,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15% 적용함.

(6) 단위재적당 생산비(b)

가. 벌목조재비

(가) 인건비

공사부분시중노임단가 중 벌목부임(벌목조재작업) 및 보통인부임(가지치기)을 적용하였음.

벌목부임	보통인부임	합계
115,303/일	84,166/일	199,469/일

(나) 기계톱경비

기계경비(감가상각비+유지비+이자)는 기계톱가격에 보정률(0.0084)을 적용하여 산정함.

기계톱가격	보정률	적용가격
840,000	0.0084	7,056/일

(다) 유류대

유류대는 휘발유와 오일의 ℓ당 가격에 각각의 하루 사용량인 5.6ℓ와 2.3ℓ를 곱하여 산정함.

휘발류		오일		합계
용량(ℓ)/일	원/ℓ	용량(ℓ)/일	원/ℓ	
5.6	1,912.40	2.3	4,320	20,645/일

(라) 벌목조재비용 산정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인건비	199,469	199,469	199,469	199,469	199,469
기계톱경비	7,056	7,056	7,056	7,056	7,056
유류대	20,645	20,645	20,645	20,645	20,645
합계	227,170	227,170	227,170	227,170	227,170
작업물량 (㎥/일)	11.90	16.59	13.78	8.97	10.39
벌목조재비 (원/㎥)	19,090	13,693	16,485	25,325	21,864

나. 산지집재

산지집재비는 인건비(보통인부임)에서 수종별 산지집재작업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보통인부임 (원/인·일)	84,166	84,166	84,166	84,166	84,166
산지집재 작업물량 (㎥/인·일)	3.3	3.4	3.4	3.4	3.3
산지집재비 (원/㎥)	25,505	24,755	24,755	24,755	25,505

다. 운반비

□ 운반비는 크게 중토장에서 제재소 및 펄프공장까지의 대운반비와 토장에서 중토장까지의 운반비인 소운반비로 구분하여 산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 발표한 2014년 원목 시장가격동향 여름호를 기준하여 적용함.

□ 소운반비의 상차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침엽수는 3,000원/㎥, 활엽수는 3,700원/㎥으로 나타남.

□ 대운반비의 상차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침엽수는 3,700원/㎥, 활엽수는 4,600원/㎥으로 나타남.

□ 침엽수와 활엽수는 함수율 등의 차이로 적재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여 운반비 산정함.

침엽수 1㎥ = 0.8톤, 활엽수 1㎥ = 1톤

(가) 소운반비

□ 침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m 이내	3,000	5,000	8,000
500 ~ 1000m		**6,600**	**9,600**
1000 ~ 2000m		9,000	12,000

□ 활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m 이내	3,700	6,300	10,000
500 ~ 1000m		**8,300**	**12,000**
1000 ~ 2000m		11,300	15,000

(나) 대운반비

□ 침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3,700	13톤	11,600	15,300	25톤	10,300	14,000
50～100km			12,600	16,300		11,400	15,100
100～200km			14,600	18,300		**12,600**	**16,300**
200～300km			-	-		15,400	19,100
300km 이상			-	-		16,400	20,100

□ 활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4,600	11톤	14,500	19,100	23톤	12,900	17,500
50～100km			15,800	20,400		14,300	18,900
100～200km			18,200	22,800		**15,900**	**20,500**
200～300km			-	-		19,200	23,800
300km 이상			-	-		20,500	25,100

라.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벌목조재비, 산지집재비, 운반비 합계의 10%를 적용함.

마. 단위재적당 생산비

(단위 : 원/㎥)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벌출비	벌목조재비	19,090	13,693	16,485	25,325	21,864
	산지집재비	25,505	24,755	24,755	24,755	25,505
	소계	44,595	38,448	41,240	50,080	47,369
운반비	소운반비	9,600	9,600	9,600	9,600	12,000
	대운반비	16,300	16,300	16,300	16,300	20,500
	소계	25,900	25,900	25,900	25,900	32,500
소 계		70,495	64,348	67,140	75,980	79,869
기타비용(10%)		7,049	6,435	6,714	7,598	7,987
합 계		77,544	70,783	73,854	83,578	87,856

(7) 시가표준액

위의 각 항목별 수치를 입목가격 산정공식에 대입하여 수종별 시가표준액을 계산함

■ 유실수

1. 산정방식

가. 유령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를 기초로,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고, 성과기의 현금흐름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 결정

나.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산정

가. 수확량 및 판매량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3.12월)을 기준하여 수령별 수확량을 추정하고 10a당 수확량에 상품화율을 적용하여 판매량 결정.

(kg/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	419	868	1,607	471	27
10년생	682	2,093	1,996	2,054	1,971	907
15년생	1,706	3,013	1,823	1,340	2,914	1,859
20년생	2,133	3,013	955	893	3,342	2,177
30년생	2,559	2,678	-	-	3,428	1,769
40년생	2,303	2,511	-	-	3,000	1,043

나. 조수입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기준으로 연생별 조수입을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	921,537	2,564,940	5,749,670	495,860	52,923
10년생	1,841,115	4,607,685	5,899,362	7,346,800	2,073,597	1,764,115
15년생	4,602,788	6,635,066	5,386,374	4,791,392	3,065,318	3,616,436
20년생	5,753,485	6,635,066	2,821,434	3,194,261	3,516,100	4,233,876
30년생	6,904,182	5,897,837	-	-	3,606,256	3,440,024
40년생	6,213,764	5,529,222	-	-	3,155,474	2,028,732

다. 생산비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상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에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자가임차료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892,182	1,562,111	2,368,040	4,024,128	722,977	629,627
10년생	1,750,085	3,405,217	4,515,596	4,912,894	1,575,001	1,594,885
15년생	3,036,940	4,418,926	4,185,203	3,490,869	2,110,559	2,639,752
20년생	3,573,129	4,418,926	2,533,237	2,602,103	2,353,994	2,988,041
30년생	4,109,318	4,050,305	-	-	2,402,682	2,540,241
40년생	3,787,605	3,865,994	-	-	2,159,246	1,744,151

라. 순수익

조수입에서 총경영비를 차감한 장래 기대 순수익을 산정함.(하기 각 연생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이를 적산하고 다시 재식 주수로 나누어 특정 연생별 주당가격을 산정)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892,182	-640,574	196,900	1,725,541	-227,117	-576,703
10년생	91,030	1,202,468	1,383,766	2,433,906	498,596	169,230
15년생	1,565,848	2,216,140	1,201,171	1,300,523	954,759	976,684
20년생	2,180,356	2,216,140	288,197	592,158	1,162,105	1,245,835
30년생	2,794,864	1,847,532	-	-	1,203,574	899,784
40년생	2,426,159	1,663,228	-	-	996,228	284,581

마. 가격결정

유령수는 상기의 투하비용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성과기 이후는 상기 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된 10a당 수익가격을 재식주수로 나누어 주당 가격을 산정함(아래 표 참조). 최종 가격은 여기서 다시 5년 단위로 평균하여 단일 단가를 산정하고 단수정리하여 기재하게 됨.

(원/주)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26,487	76,917	99,473	79,267	14,444	29,273
10년생	79,329	139,266	97,387	51,471	24,624	81,624
15년생	114,869	149,874	44,157	18,796	29,267	107,565
20년생	127,691	140,782	17,592	3,388	29,319	92,824
30년생	99,331	112,440	-	-	24,649	37,852
40년생	39,642	64,891	-	-	14,116	6,814

Ⅷ. 어 업 권

1. 용 어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어업권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말한다.

2. 종 류

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1)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 등)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 등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 양식어업 : 2)~4) 및 6)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 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 양식어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2)~5)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 양식어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1) 양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 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시 가 표 준 액

○ 어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조사가격	=	인근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결정가액	=	조사가격	×	0.7

○ 인근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시장·군수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어장의 지역별·종별·양식방법별 형성가격을 조사한 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거 시·군·구에서 조사한 동종어장의 1ha당 어구값의 시장(市場)가격
- ha당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시장조사 어구값

$$\text{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text{동종어장의 시장조사 시설별 어구값의 합계액} \times \frac{(\text{면허기간} + \text{연장기간}) - \text{경과연수}}{\text{면허기간} + \text{연장기간}}$$

- 어구시설이 없는 어장의 경우는 어구설치비 제외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한 동종 어장의 1ha당 표준종패 및 치어대의 시장조사가격
- 1ha당 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양식물 종패 및 치어대
- 양식물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음

어업권면허 유효기간

구 분	어업의 종류	유효기간	비 고
수산어업	정 치 망 어 업	10년	
	양 식 어 업	〃	
	마 을 어 업	〃	
내수면어업	양 식 어 업	10년	
	정 치 망 어 업	5년	
	공 동 어 업	〃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1)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2)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한다.

〈산출예시〉

○ 취득물건
·어장명 : 굴 수하식 ·면적 : 10ha ·면허취득일 : 2004. 5. 1.
○ 취득일시 : 2010. 2. 25. ○ 취득가격 : 60,000,000원
○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조사 결정액 : 110,000,000원
○ 동종어장의 시설어구비 시장조사액 : 10,000,000원
○ 동종어장의 종패대 시장조사액 : 9,000,000원
○ 동종어장의 어구설치비

$$10,000,000\text{원} \times \frac{(10\text{년}+10\text{년})-6\text{년}}{10\text{년}+10\text{년}} = 7,000,000\text{원}$$

○ 조사가격
94,000,000원 = 110,000,000원 − 7,000,000원 − 9,000,000원
○ 결정가액
65,800,000원 = 94,000,000원(조사가격) × 0.7
※ 결정과표 산출액의 1,000원미만 버림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목차

일련번호	양식 품종	양식 방법	시설기준 면적	비고
1	숭어	축제식 (조방양식)	1ha	
2	조피볼락	해상가두리	1ha	
3	넙치	육상수조식	500㎡	
4	넙치	해상가두리식	1ha	
5	농어/돔	해상가두리식	1ha	
6	대하	축제식	1ha	
7	꽃게	축제식	1ha	
8	굴	연승수하식	1ha	
9	굴	투석식 (간석지)	10ha	
10	지중해담치	연승수하식	1ha	
11	피조개	연승수하식	1ha	
12	새꼬막	연승수하식	1ha	
13	꼬막	연승수하식	1ha	
14	바지락	연승수하식	1ha	
15	동죽	살포식 (간석지)	1ha	
16	가무라조개	살포식 (간석지)	1ha	
17	백합	살포식 (간석지)	1ha	
18	진주조개	연승수하식	1ha	
19	큰가리비	연승채롱수하식	1ha	
20	전복	천해투석식	1ha	

일련번호	양식 품종	양식 방법	시설기준 면적	비고
21	소라	천해투석식	1ha	
22	김	건흥식 (부류식 망흥)	1ha	
23	미역	건흥식 (부류식 망흥)	1ha	
24	톳	연승수하식	1ha	
25	파래	건흥식 (부류식)	1ha	
26	우렁쉥이	연승수하식	1ha	
27	갯지렁이	축제식	10ha	
28	김과 바지락	건흥식(지주망흥) 살포식(간석지)	1ha	
29	김과 동죽	건흥식(지주망흥) 살포식(간석지)	1ha	
30	미역과 우렁쉥이	연승수하식	1ha	
31	다시마와 우렁쉥이	연승수하식	1ha	
32	다시마와 전복	연승수하식 천해투석식	1ha	
33	톳과 전복	연승수하식 천해투석식	1ha	
34	다시마와 전복	연승수하식	1ha	
35	톳과 전복	연승수하식	1ha	

※ 시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을 참조하여 시·군·구별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함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

1. 축제식 조방양식(숭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숭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방조제 성토		㎥	100,000		
방조제 돌붙임		㎡	4,000		
방조제 사석		㎥	5,000		
주, 배수문	ø1000㎜×15	개소	2		
관 리 사	콘크리트블럭 건물	평	100		
사 료	배합사료	kg	20,000		
약 품	포르마린 등	ℓ	200		
관 리 선	소형 전마선	대	1		
관 리 인	남	명	3		
기 술 자	양식기사	명	1		
계					

2. 해상가두리(조피볼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조피볼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부 자	스티로폴 (400ℓ)	개	240			수심 10m 기준
목 재	각목 (10㎝×12㎝×6m)	개	160			
그 물	나이론 38합사 8절	필	6			
그 물	나이론 15합사 12절	필	6			
그 물	나이론 9합사 20절	필	6			
부자결착줄	PP사ø8㎜	m	1,000			
닻	철재 75kg	개	34			
닻 줄	PPø22㎜	m	1,020			
힘줄 로프	PE사 ø8㎜	m	800			
볼트, 넛트	22㎝×4부	개	640			
관리사 및 작업대	5×5m	조	12			
관 리 선	선외기 (0.5톤)	척	1			
시설제작인부	특수인부	명	180			
계						

3. 육상수조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500㎡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수조 시설					
수조 (사각)	6×6×1m	조	10		
2. 하우스 시설					
골 격	철제 1.5m	본	50		
아연 Pipe	1m	본	20		
아연 Pipe	7m	본	500		
보온 덮개	4×25m	환	25		
3. 주배수 시설					
PVC Pipe	ø100㎜	본	50		
PVC Pipe	ø75㎜	본	10		
PVC Pipe	ø50㎜	본	20		
PVC Pipe	ø25㎜	본	20		
PVC 엘보	ø100㎜	개	30		
PVC 엘보	ø50㎜	개	20		
PVC 엘보	ø25㎜	개	20		
PVC 연결봉	ø100㎜	개	20		
PVC 연결봉	ø50㎜	개	20		
PVC 연결봉	ø25㎜	개	10		
PVC 볼밸브	ø50㎜	개	20		
PVC 볼밸브	ø25㎜	개	20		
4. 여과 시설					
배수침전실	7.5평	동	1		
5. 가온 시설	9.9㎡ (3평)				
보일러실	3평	동	1		
보 일 러	40.000㎉	대	1		
엑셀호스	20㎜	개	4		
버 너	70.000㎉	개	1		
6. 사료저장 및 설비	20평	동	1		
건물(조립식)	7.5Hp	대	1		
냉 동 기	우레탄 15am	평	10		
방열시설비	전기식	대	1		
사료분쇄기	전기식	대	1		
배 합 기	전기식	대	1		
초 파 기	14Hp	대	1		
원 동 기					
7. 전기 시설	7평	동	1		
기계, 전기, 펌프실	삼상	50kw	1		
전 력	20kw	개	3		
유상 변압기	10hp	개	2		
모 터	1Hp ø100㎜	개	4		
원 동 기	ø35㎜	환	1		
고압호스	ø100㎜	환	1		
고압호스	5평	동	1		
8. 관 리 사	7.5평	동	1		
9. 창 고	남	명	170		
10. 인 건 비	여	명	60		
계					

4. 해상가두리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아비동					
부 자	(12㎝×15㎝×10m)	개	240			
닻	대형 (400ℓ)	개	420			
닻 줄	철제 75kg	개	26			
사 육 망	PP로프 ø40㎜	m	1,170			수심 15m 기준
(방오처리망)	모지망 105경	조	5			
	무결절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5×5×3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	m	2,400			
볼트, 낫트	33㎝×6부	개	1,440			10×10×3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	개	40			10×10×3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	개	10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5×5m
사료저장고	3평	동	1			10×10m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5. 해상가두리식(농어/돔)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농어/돔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12㎝×15㎝×10m	개	240			
부 자	대형 (400ℓ)	개	420			
닻	철제 75kg	개	26			
닻 줄	PP로프 ø40㎜	m	1,170			수심 15m 기준
사 육 망	모지망 105경	조	5			
(방오처리망)	무결절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5×5×5m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5×5×5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	m	2,400			
볼트, 낫트	33㎝×6부	개	1,440			10×10×7m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10×10×7m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 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6. 축제식(대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대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토목공사>						
1. 방조제						
성 토		㎡	41,800			
돌 붙 임		㎡	3,110			
사 석		㎡	4,400			
줄 떼		㎡	1,584			
콘크리트		㎡	625			
거푸집		㎡	308			
철 근		톤	1.32			
2. 내 방 제						
성 토		㎡	53,922			
콘크리트		㎡	1,544			
거 푸 집		㎡	245			
3. 구조물공사						
취배수문	3×3m	개소	2			
<건축공사>						
1. 사료처리장	블 럭 조	평	50			
2. 사 무 실	블 럭 조	평	30			
3. 관 리 사	벽돌양옥	평	36			
<양성관>						
1. 치 하	체장 2㎝ 내외	미	600,000			ha당 20,000미
2. 사 료	배합사료	kg	150,000			
계						

7. 축제식(꽃게)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꽃게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330g/미	kg	4,000			
사 료	어 분	kg	4,000			
PP 그물망	35×35㎜	필	2			
백관(pipe)	ø50㎜, 길이 2m	개	200			
철 선	# 8	m	416			
지 지 항	ø12㎝, 길이1.8m	개	28			
시 멘 트	40kg	포	15			
선 박	2톤	척	1			
계						

8. 연승수하식(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연	7,000연 이하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은 5,000연 이하)
< 시 설 >						
간 승	18㎜	m	2,000			
종 승	16㎜	m	300			
닻 줄	20㎜	m	2,080			
부 자 묶 음 줄	8㎜	m	2,000			
수하연 (코팅사)	3.8㎜	연	2,840			
부 자	60ℓ	개	1,016			
	200ℓ	개	4			
닻	ø15㎝×4m	개	50			
인 부						
어 장 시 설	남자	명	40			
일 반 인 부	여자	명	30			
(채묘연 조립)	남자	명	4			
(채묘연 수하)	여자	명	16			
계						

9. 투석식(간석지)(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0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산 석	20㎏	개	100,000			10ha 기준
운 반 비	3톤 (선박)	척	80			
운 반 비	4톤 (차량)	대	300			
시설인부	남 자	명	400			
계						

10. 연승수하식(지중해담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지중해담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부 자	65ℓ	개	1,006			부자 간격 2m 기준
- 표시부자	200ℓ	개	4			
- 부자묶음줄	PP 5㎜	m	2,200~3,500			
- 친 승	PP 16㎜	m	2,000			
- 종 승	PP 16㎜	m	200			
- 말 목	ø15㎝×5m	본	52			친승, 종승 각 4개씩, 사귀 각 3개씩
- 수 하 연	PE rope (120합사)	m	15,000~20,000			
- 폐타이어 (부착기)	15~20㎝	kg	9,375			
* 종 묘						
- 채묘기수 (콜렉타)		개	68,640~80,080			
인 부						
어 장 시 설	남	명	21			
말 목 부 설	남	명	10			
부 자 결 속	남	명	13			
수하연 조립	남	명	14			
수 하 시 설	여	명	90			
계						

11. 연승수하식(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패	2㎝ 내외	마리	50만～70만			
부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닻	60kg	개	8			
닻줄	ø18㎜	m	480			
사계줄	ø18㎜	m	480			
작업대	12×6m	대	1			수심 20m 기준
선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4			수심 20m 기준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명	8 20			
계						

12. 연승수하식(새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새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패	각장 1.5~2㎝	톤	1~1.5			수심 10m 기준
부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닻	60kg	개	8			
닻줄	ø18㎜	m	240			
사계줄	ø18㎜	m	400			
선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3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2			
계						

13. 연승수하식(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패	각장 1~1.5㎝	톤	3.5~7			
로프	ø5㎜	m	400			
항목(대)	10㎝×10㎝×6m	개	4			
항목(소)	5㎝×5㎝×2m	개	36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6			
종패운반 차량	2.5톤 트럭	대	2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4			
계						

14. 연승수하식(바지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	톤	3.5～7			각장 1㎝는 20㎏포장 각장 2㎝는 30㎏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 대	30㎏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살 포 선 박	2톤	척	3～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20			
계						

15. 살포식(간석지)(동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동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	톤	3.5～7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 대	30㎏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각장 1㎝는 20㎏포장
종 패 운 반 용 선	2톤 선박	척	3～5			각장 2㎝는 30㎏포장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20			
계						

16. 살포식(간석지)(가무락조개)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가무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2.0~3.0㎝	톤	3.5~7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 대	30㎏들이	장	150~2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살 포 선 박	2톤	척	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0			
계						

17. 살포식(간석지)(백합)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백합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패	각장 1.0~3.0㎝	톤	1~3			각장 1㎝는 20kg포장 각장 2㎝는 30kg포장
항목(철근)	ø3㎝, 길이 1.5m	본	80			
럿셀망지	12합 12절	필	2			
상단버팀줄	ø5㎜	m	400			
하단버팀줄	ø3㎜	m	400			
결속로프	ø5㎜	m	1,400			
마대	30㎏들이	장	34~1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2톤 트럭	대	3			
종패운반(용선)	2톤 선박	척	2			
어장시설 인부 (조위망제작인부 포함)	남, 여	명	20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0			
계						

18. 연승수하식(진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진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간 승	PP ø5~18㎜	m	2,000			
- 닻 줄	PP ø16㎜	m	900			
- 부 자(대)	스티로폴 200ℓ	개	8			
- 부 자(소)	스티로폴 70ℓ	개	402			
- 닻	철재 (20kg)	개	28			
- 부자묶음줄	PP ø9㎜	m	250			
- 포켓네트	70×45㎝	개	2,000			
- 중간채롱	34×34㎝	개	3,960			
- 모패채롱	40×70㎝	개	3,960			
- 알빼기 채롱	30×40㎝	개	3,960			
- 요 양 기	프라스틱제	개	1,000			
- 채롱 수하연	PP ø6㎜ 코팅사	환	20			
- 치 패	각장 5㎝ 이하	마리	23,760			
- 중 간 패	각장 5~8㎝	마리	11,880			
- 모 패	각장 8㎝ 이상	마리	4,851			
- 핵	ø7~8㎜	관	20			
* 인 부						
- 어장시설	선박 (1척×5일)	척	5			
- 인 부	남자 (10명×5일)	명	50			
- 시설인부	남자 (2명×6개월) 여자 (10명×6개월)	명 명	12 30			
계						

19. 연승채롱수하식(큰가리비)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큰가리비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층 부 자	PVC ø370㎜	개	227			10m간격 1개 시설
사 귀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4			사귀 각 1개 시설
증 층 부 자	PVC ø300㎜	개	737			3m간격 1개 시설
사 각 승	PP로프 ø34㎜	m	800			200m × 4연
멍 줄	PP로프 ø36㎜	m	2,550			75m × 34연
간 승	PP로프 ø32㎜	m	1,800			200m × 9연
표 층 부 자 줄	브레이드로프 ø12㎜	m	1,386			6m (수하길이 5m + 묶음줄 1m) × 231개
중 층 부 자 줄	PP로프 ø9㎜	m	1,106			1.5m (수하길이 1m+ 묶음줄 0.5m) × 737개
지 승	PP로프 ø9㎜	m	17,600			1m간격시설(200×11×8)
육성기(채롱)	코팅철사 12단	개	2,200			1m간격 시설 (200×11)
멍	콘크리트 4각 12톤	개	34			간승 11연×2 + 종승4연×2 + 사귀
종 묘 (본양성시)	각장 7㎝ 내외	개체	343,200			채롱당 156마리 수용
계						

20. 천해투석식(전복)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지주 (콘크리트)	1×1m	개	20			
부 자	100ℓ	개	20			
부 자 연 결 줄	PE ø15㎜	m	600			
자재운반 차량	4톤 트럭	대	1			
종 패	각장 3㎝ 이상	마리	20,000			
투석용 석재	300kg	개	3,330			
관 리 선	2~5톤	척	1			
시 설 인 부	남	명	4			
용 선	5~10톤	척	1			
살 포 인 부	남	명	2			
계						

21. 천해투석식(소라)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소라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어장표지 시설						* 투석후 해조류 증식에 의한 소라 등 패류자원 번식 조장 (따로 종패 살포를 안함)
부 자	스치로폴 ø30㎝	개	8			
표 지 주	ø1㎝×1m	개	8			
부자연결줄	PE 로프 ø15㎜	m	200			
닻	300kg 석재	개	8			
투 석						
석 재	300kg	개	3,330			
선 박	100톤	척	10			
석재 운반차량	10톤	대	100			
인 부	일반인부 스쿠바다이버	명 명	10 10			
종 묘	각고 1㎝	마리	20,000			
계						

22. 건흥식(부류식 망흥)(김)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패 각	50개/상자	상자	50			1ha당 20책 기준
망	1.8×40m	책	25			
부 죽	1.8m	개	275			
결 착 사	PP 160합사	환	3			
어 미 밧 줄	PP 12㎜	m	1,000			
부 자	스치로폴 360㎜	개	550			
닻	소나무 1m, ø15㎝	본	26			
관 리 선	1톤급	척	1			
계						

23. 건흥식(부류식 망흥)(미역)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미역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PP ø12㎜	m	3,0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2㎜	m	2,000			
닻 줄	PP 150합사	m	2,000			
부 자 줄	크레모나 18합사	m	500~1,000			
종묘감는줄 (씨 줄)		m	3,000			
부 자	PVC ø18㎝	개	450			
닻	ø15㎝×1m소나무	본	50			
관 리 선	1.5G/T	척	1			
계						

24. 연승수하식(톳)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톳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5~10㎝	kg	300~400			
친 승	PP ø12㎜	m	2,000			
닻 줄	PP ø12㎜	m	800			
부자줄 및 침자묶음줄	PE ø3㎜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ø5㎜	m	2,000			
종묘줄친승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결 착						
부 자	ø18㎜	개	260			
닻	소나무 1m ø15㎝	개	40			
관 리 선	1.5G/T	척	1			
계						

25. 건흥식(부류식)(파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파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망	1.8×40m	책	25			
로 프	ø15㎜	m	400			
로 프	ø12㎜	m	200			
닻	8관	계	42			수심 7m 기준
닻 줄	ø18㎜	m	900			
항 목		본	100			
부 죽 (大)	1.8m	개	275			25책×11개/책
부 죽 (小)		개	300			
부 자	스치로폴(大)	개	44			
P P 사	30합사	관	10			
채 취 선	0.8톤	척	1			
계						

26. 연승수하식(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 부 자						
- 소 형	개량부자 65ℓ	개	660			
- 중 형	스치로폴 200ℓ	개	4			어장표시용
* 로 프						
- 사 각 줄	ø18㎜	m	400			
- 닻 줄	ø18㎜	m	4,500			
- 연 승 줄	ø18㎜	m	1,800			닻 100개×45m
- 허 리 줄	ø18㎜	m	100			18줄×100m
- 부자줄 및 부자묶음줄	ø9㎜	m	4,000			
- 수하연 묶음줄	ø9㎜	m	3,000			
- 천 로 프	ø30㎜	m	5,000			
- 종 묘	m당 100미	m	71,000			
- 말치는 장비 (항타기)	-					
- 말 목(닻)	소나무 ø15㎝×5m	대	1			
2. 인 부		개	100			
* 어장시설 (말목박기)						
* 연승나르기 및 사각묶기	남자(고용) (자가)	명	3, 1			
* 종묘감기 및 본양성	남자(고용) (자가)	명	2, 1			
* 수하연 육상제작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80, 10			
* 종묘운반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6, 3			8명×10일
* 종묘운반작업대	동력선(자가) 2.5톤	척	2			2명×3일
* 종묘운반 인부	5×8m	대	1			2일×1척
3. 부대시설	남자(고용),남자(자가)	명	2, 2			1명×2일 1명×2일
* 관 리 선		척	1			
* 작 업 대	동력선(자가) 5×8m(자가)	대	1			
계						

27. 축제식(갯지렁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갯지렁이
시설기준 : 10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지 철 주	ø22㎜×2m	본	4			
철 주	ø16㎜×1.5m	본	140			
세 망	방충망 폭 70㎝	m	4,200			
목 부 자	ø50㎜	개	13,800			
갯 지 렁 이	모 충	kg	400			
버 리 줄	PE rope ø6㎜	m	14,800			
트 와 잉 사	PE rope ø5㎜	m	1,400			
대 부 자	스치로플 ø30×50㎝	개	70			
소 부 자	스치로플 ø30㎝	개	60			
부 자 연 결 줄	PE rope ø5㎜	m	700			
그 물 작 업 인 부	남 자	명	80			
자 재 운 반	4.5톤 트럭	대	1			
시 설 인 부	남 자	명	200			
계						

28. 건흥식(지주망흥) 김과 살포식(간석지) 바지락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김과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김 지주망흥>						
패 각	50개/상자	상자	40			
망 지	1.8×40m	책	20			
부 죽	30본/속	속	8			
항 목	25~30척	개	420			
매 심 이 줄	PP 160합사	환	4			
관 리 선	1톤급	척	1			
<바지락살포식>						
종 패	1~2㎝	kg	5,000			
표시부자연결대	1×1×1m 콘크리트	개	8			
부 자	ø30㎝(스치로폴)	개	8			
부 자 연 결 줄	PE rope ø15㎜	m	240			
계						

29. 건흥식(지주망흥) 김과 살포식(간석지) 동죽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김과 동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김 지주망흥>						
패 각	50개/상자	상자	40			
망 지	1.8×40m	책	20			
부 죽	30본/속	속	8			
항 목	25~30척	개	420			
매 심 이 줄	PP 160합사	환	4			
관 리 선	1톤급	척	1			
<동죽살포식>						
종 패	1~2㎝	kg	5,000			
표시부자연결대	1×1×1m 콘크리트	개	8			
부 자	ø30㎝(스치로폴)	개	8			
부 자 연 결 줄	PE rope ø15㎜	m	240			
계						

30. 연승수하식 미역과 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미역과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미역연승수하식>						
종 묘	5~10㎜	m	1,5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100			
닻 줄	PP ø22㎜	m	360			
부 자 줄	PP 150합사	m	1,430			143연×10대×1m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1,500			
부 자 (대)	스 치 로 폴 ø35㎝	개	50			
부 자 (중)	PVC ø18㎝	개	160			
닻	50kg	개	12			
관 리 선	1톤	척	1			
<우렁쉥이수하식>						
부 자 (대)	스 치 로 폴 ø35㎝	개	50			
부 자 (중)	PVC ø18㎝	개	160			
닻 줄	PP ø22㎜	m	360			
사 계 줄	PP ø18㎜	m	400			
간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200			
지 승	PP ø9㎜	m	14,300			
종 묘 결 착 줄	PP 스트랑	m	10,725			143연×10대×10m
천 로 프	ø30㎜	m	7,150			
닻	50kg	개	12			
침 자	막걸리병	개	1,430			양성연 5m 기준
종 묘	m당 200미	m	10,725			
계						

31.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사	유엽5~10㎜	m	1,500			친승의 1.5배
친승	PP ø16㎜	m	1,000			
허리줄	PP ø16㎜	m	100			
닻줄	PP ø22㎜	m	360			
부자줄	PP 150합사	m	1,430			143연×10대×1m
씨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1,500			
부자(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자(중)	PVC ø18㎝	개	160			
닻	50kg	개	12			
관리선	1톤	척	1			
<우렁쉥이수하식>						
부자(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자(중)	PVC ø18㎝	개	160			
닻줄	PP ø22㎜	m	360			
사계줄	PP ø18㎜	m	400			
간승	PP ø16㎜	m	1,000			
허리줄	PP ø16㎜	m	200			
지승	PP ø9㎜	m	14,300			
종묘결착줄	PP 스트랑	m	10,725			143연×10대×10m
천로프	ø30㎜	m	7,150			
닻	50kg	개	12			
침자	막걸리병	개	1,430			양성연 5m 기준
종묘	m당 200미	m	10,725			
계						

32.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천해투석식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 사	유엽5~10㎜	m	3,000			
친 승	PP ø22㎜	m	2,000			
닻 줄	PP ø22㎜	m	720			
부 자 줄	PP 150합사	m	2,860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3,0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100			
부 자 (중)	PVC ø18㎝	개	320			
닻	50kg	개	24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종 패	각장 3㎝ 이상	마리	20,000			
투 석	돌 20kg 이상	개	3,000			
계						

33. 연승수하식 톳과 천해투석식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톳과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톳 수하식>						
종 묘	5~20㎜	kg	300~400			
친 승	PP ø12㎜	m	2,000			
닻 줄	PP ø22㎜	m	800			
부 자 줄 등	PE ø3㎜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5㎜	m	2,000			
종묘친승결착줄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40			
부 자 (중)	PVC ø18㎝	개	180			
닻	50kg	개	40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종 패	각장 3㎝ 이상	마리	20,000			
투 석	돌 20kg 이상	개	3,000			
계						

34.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 사	유엽5~10㎜	m	3,000			
친 승	PP ø22㎜	m	2,000			
허 리 줄	PP ø22㎜	m	300			
침 자 (돌)	500g	개	820			2.5m당 1개
닻 줄	PP ø22㎜	m	2,100			수심 10m 기준
부 자 줄	PP 150합사	m	840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3,0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28			
부 자 (중)	PVC ø18㎝	개	380			
닻	50kg	개	72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 채롱식>						
로 프	ø16㎜	m	880			
침 자	막걸리병	개	220			
채 롱	PVC 다단식	개	220			채롱간격 10m
계						

35. 연승수하식 톳과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톳과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톳 수하식>						
종묘	5~20㎜	kg	3,00~400			
친승	PP ø12㎜	m	2,000			
닻줄	PP ø20㎜	m	800			
부자줄등	PE ø3㎜	m	400			
종묘줄	PP 스트링 5㎜	m	2,000			
종묘친승결착줄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부자(대)	스치로폴 ø35㎝	개	40			
부자(중)	PVC ø18㎝	개	180			
닻	철제 50kg	개	40			
관리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로프	ø16㎜	m	880			
침자	돌	개	220			
채롱	PVC 다단식	개	220			채롱 간격 10m
계						

Ⅸ. 광 업 권

1. 용 어 정 의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광업권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이 광업권의 설정대상임

3. 용 어 해 설

1) 광업(鑛業) : 지하에 매몰되었거나 표토층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을 찾아내고 이를 채굴하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選鑛), 제련(製鍊) 기타의 사업을 말함

2) 광산(鑛山) : 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3) 광상(鑛床) : 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것

4) 탐광(探鑛) : 광산·탄전 등의 개발을 위하여 광상을 발견하고, 그 성질, 상태, 규모 등을 알아내는 작업

5) 채광(採鑛) : 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6) 선광(選鑛) :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7) 제련(製鍊) : 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 광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외의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가.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가채광량포함)

조사가격 = [①(톤당순수입가격×매장량) 또는 ②인근광구의 비준가격 −(③기계 및 시설비+④기계설비이전비)]×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 : [①−(③+④)]×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없을 때 : [②−(③+④)]×0.7

≪적용요령≫

1)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2)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 : 감가액 감안 적용
3) 시설비 : 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하고 구축물은 전액적용
4) 인근 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 제외
5) 기계시설이전비 : 기계시설 설치비의 10%계상
6)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를 승함

나. 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는 광산과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

조사가격 = [①(광업권 설정비+시설비)+③(매장량×톤당순수입가격) −(④기계 및 시설비+⑤기계설비이전비)]×0.7

≪적용요령≫

1) 광업권설정비 : 등록시 소요경비

2) 시설비 : 시추작업비

3) 인근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제외함

4)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5)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 : 감가액 감안적용

6) 시설비 : 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 구축물은 전액적용

7) 기계시설이전비 : 기계 및 시설 설치비의 10%계상

8)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를 승함

X. 회 원 권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회원권을 말한다.

2. 종 류

가. 골프회원권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라. 승마회원권

마. 요트회원권

3. 시가표준액

붙임 각 회원권의 기준가격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적용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 골프회원권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1	소재지2	소재지3	명칭	구분1	기준가격
1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1차	135,000
2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2차	180,000
3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3차	224,000
4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4차	280,000
5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5차	1,080,000
6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6차	540,000
7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7차	855,000
8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8차	950,000
9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9차	1,140,000
1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500-16	썬밸리	창립	135,000
11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1차	225,000
12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2차,3차	246,000
13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4차	255,000
14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4차	595,000
15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5차	212,000
16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5차	425,000
17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5차	595,000
18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주중(가족)	37,500
19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젠스필드	주중(개인)	22,500
20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일반(1차)	750,000
2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일반(2차)	810,000
22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일반(3차)	900,000
23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주중(1차)	45,000
24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주중(2차)	67,500
25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창립	720,000
26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일반(4차~7차)	950,000
27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주중(3차~7차)	67,500
28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레인보우힐스컨트리클럽	주중가족1차,3차	90,000
29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382	코스카	VIP	360,000
3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382	코스카	VVIP	720,000
3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382	코스카	일반(1차)	105,000
3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382	코스카	일반(2차)	120,000
3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382	코스카	일반(3차)	135,000
3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382	코스카	주중회원	27,000
35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382	코스카	주중회원	45,000
36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1차 일반	51,400
37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주중(가족)	22,500
38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주중(개인)	15,300
39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1차 특별	87,300
40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1차/로얄	154,000
41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주중/VIP	39,600
42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주중/무기명	39,600
43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창립/VIP	65,900
44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창립/일반	39,600
45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창립/특별	66,900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1	소재지2	소재지3	명칭	구분1	기준가격
46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창립/로얄	176,000
47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282-1	힐데스하임	창립/프리미엄	308,000
4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산103-1	에머슨(舊 중앙)	가족	16,000
4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산103-1	에머슨(舊 중앙)	개인	12,000
5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정회원	137,000
51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정회원	100,000
52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정회원	110,000
53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정회원	123,000
54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정회원	137,000
55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정회원	160,000
56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정회원	189,000
57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정회원	225,000
58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주중	29,000
5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무기명	540,000
6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천룡	무기명	855,000
6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	ART Valley	무기명(1차)	520,000
6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	ART Valley	무기명(2차)	580,000
63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	ART Valley	정회원	45,000
6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	ART Valley	정회원(골드)	88,000
65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	ART Valley	평일회원(가족)	11,500
6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	ART Valley	평일회원(개인)	10,000
67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기러기회원권	71,900
68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묶음회원권(C)	373,000
69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외국인1차	71,400
7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외국인2차	99,600
71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일반1차(S)	79,000
72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일반2차(I)	89,900
73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일반3차(L)	93,200
74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일반4차(K)	102,000
75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일반5차(R)	128,000
76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일반6차(V)	135,000
77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일반7차(E)	102,000
78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실크리버	주중(L)	27,500
79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	이븐데일	VIP	90,400
80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	이븐데일	일반정회원	31,000
81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	이븐데일	주중	21,100
82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	이븐데일	특별VIP	595,000
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華山)	40-1	그랜드CC	법인	32,400
8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華山)	40-1	그랜드CC	일반	30,500
85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베스트플러스	23,500
86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VIP	326,000
87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일반1차	41,000
88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일반2차	43,800
89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일반3차	53,100
90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일반4차	51,000
91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일반5차	132,000
92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주중1차	16,000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1	소재지2	소재지3	명칭	구분1	기준가격
93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주중2차	18,900
94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떼제베	주중3차	14,800
9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슈페리어	44,100
9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아일랜드	26,500
9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엠버서더	70,500
9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일반	15,000
9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주중1,2차	7,800
10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주중3,4차	8,100
10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주중5차	8,280
1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주중6차	9,000
10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주중7,8차(트윈)	23,700
10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주중7,8차(파인)	8,000
10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주중9,10,11차	9,000
10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주중9,10,11차(트윈)	25,900
10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95-1	임페리얼 레이크	프레지던트	401,000
108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24-1	동촌CC	일반정회원(창립)	132,000
109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24-1	동촌CC	프리미엄회원(창립)	264,000
110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24-1	동촌CC	VIP정회원(창립)	1,116,000
111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182	로얄포레	일반2,3,4차(분1억3천)	91,000
112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182	로얄포레	일반2,3,4차(분1억5천)	105,000
113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182	로얄포레	일반2,3,4차(분1억7천)	119,000
114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182	로얄포레	일반VIP(분3억)	210,000
115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182	로얄포레	일반VVIP(분10억)	950,000
116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일반11차	72,000
117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일반12,14,15차	72,000
118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일반2,3,4,5차	72,000
119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일반9차(분2억)	142,000
120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주중(개인)	15,500
121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주중(개인)16,17,18,19	12,900
122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주중(부부)	24,250
123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주중(부부)16,17,18,19	23,300
124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주중10차	15,400
125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산11-1	시그너스	주중20차	16,700
126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3	상떼힐(구 중원스카이뷰)	기여1차	70,000
127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3	상떼힐(구 중원스카이뷰)	기여2차	71,700
128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3	상떼힐(구 중원스카이뷰)	기여3차	74,600
129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3	상떼힐(구 중원스카이뷰)	기여4차	71,700
130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3	상떼힐(구 중원스카이뷰)	일반1차	15,000
131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3	상떼힐(구 중원스카이뷰)	일반2차(구3천)	14,700
132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3	상떼힐(구 중원스카이뷰)	일반2차(구9백)	14,700

② 콘도회원권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1	소재지2	소재지3	명칭	구분1	구분2	기준가격
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	대명리조트단양	19평형	1/10구좌	11,700
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	대명리조트단양	19평형	1/12구좌	10,700
3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	대명리조트단양	19평형	1/24구좌	8,460
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	대명리조트단양	28평형	1/10구좌	20,900
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	대명리조트단양	28평형	1/12구좌	17,500
6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121.73	6	68,400
7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180.55	6	101,000
8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241.99	6	164,000
9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121.73	12	34,200
10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180.55	12	50,500
1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241.99	12	82,000
12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66.49	12	27,000
13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79.51	12	27,800
14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솜포레스트	94.44	12	32,800
15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00-10	ES제천	105.79	10	16,200
16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00-10	ES제천	142.15		28,800
17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00-10	ES제천	66.12	10	12,400
18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00-10	ES제천	69.42	10	11,400
19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00-10	ES제천	82.65	10	13,900
20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00-10	ES제천	99.17	10	19,200
2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1	사조(수안보)	66.58(20)	10	960
22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1	사조(수안보)	91.14(27)	10	1,140
23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48-2	한화(수안보)	175.65(26)	10	19,200
24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48-2	한화(수안보)	87.04(26)	10	5,760
25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78	한국(수안보)	85.05(25)	10	1,920
26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55-1	켄싱턴(충주)	116.00(35)	10	4,800
27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55-1	켄싱턴(충주)	53.10(16)	10	1,390
28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55-1	켄싱턴(충주)	69.00(21)	10	2,050
29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55-1	켄싱턴(충주)	86.00(26)	10	3,420
30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40-10	후렌드리	36.36(11)	18	39,600
31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40-10	후렌드리	52.89(16)	18	39,600

③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1	소재지2	소재지3	명칭	구분1	구분2	기준가격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00-3	라마다 휘트니스센터	개인 회원		1,800
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00-3	라마다 휘트니스센터	법인 기명2인		3,420
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00-3	라마다 휘트니스센터	부부 회원		3,240

XI. 지 하 자 원

1. 용어정의

지하자원이란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돌, 석탄, 석유, 철, 금, 은, 구리 등) 따위를 채굴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하자원(광물)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

3. 용어해설

○ 광산(鑛山) : 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 광상(鑛床) : 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것

○ 채광(採鑛) : 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 선광(選鑛) :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 제련(製鍊) : 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 지하자원(광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가액이 없을 경우 본표의 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 2015년도분 지하자원 변경내역

(단위 : 원 / 톤)

시도명	광물	품위	2015년 적용가액	비고
충청북도	고령토	(도석) Al_2O_3 16%	60,000	
충청북도	고령토	(도석) 중	125,000	
충청북도	고령토	SK28-33, Fe_2O_3 4%이내	24,000	
충청북도	고령토	전품위	15,500	
충청북도	규사	Sio2 92%	35,000	
충청북도	규석	Sio2(미분)	15,000	
충청북도	규석	Sio2(입상)	7,000	
충청북도	규석	SiO_2 92-94%	16,500	
충청북도	규석	SiO_2 94%	28,300	
충청북도	규석	SiO_2 98%	11,400	
충청북도	규석	SiO_2 98.10%	6,400	
충청북도	규석	SiO_2 99%	30,000	
충청북도	금	Au 140g/t	3,000,000	
충청북도	금(g)	Au 99.9	50,000	
충청북도	납석	Al_2O_3 20%	3,500	
충청북도	납석	Al_2O_3 22%	7,500	
충청북도	몰리브덴	MoS_2 85-88%	10,000	
충청북도	사문석	전품위	10,000	
충청북도	석회석	(대리석) CaO 23.5%(MgO 20.9%)	9,000	
충청북도	석회석	(방해석) CaO 50%	20,000	
충청북도	석회석	(소석회) CaO 54%	19,000	
충청북도	석회석	(소석회) CaO 60%	83,000	
충청북도	석회석	(소석회) CaO 70%	110,000	
충청북도	석회석	(소석회) CaO 93%	150,000	
충청북도	석회석	CaO 48% 미만	3,000	
충청북도	석회석	CaO 48% 이상 50% 미만	4,800	
충청북도	석회석	CaO 50% 이상 53% 미만	7,000	
충청북도	석회석	CaO 53% 이상	9,000	
충청북도	석회석	백운석(MgO 20%미만)	5,000	
충청북도	석회석	백운석(MgO 20% 이상 21%미만)	6,500	
충청북도	석회석	백운석(MgO 21%이상)	7,200	
충청북도	운모	Al_2O_3 16%	90,000	
충청북도	운모	Al_2O_3 28%	300,000	
충청북도	운모	Al_2O_3 32-35%	320,000	
충청북도	은(g)	Ag 99.9	3,000	
충청북도	장석	Fe_2O_3 0.25%, K_2O 11%	15,000	
충청북도	장석	Fe_2O_3 0.3%, K_2O 5.78%	10,000	
충청북도	장석	Fe_2O_3 0.5%, K_2O 8%	27,000	
충청북도	장석	K_2O 10%	21,000	
충청북도	장석	전품위	20,000	
충청북도	활석	3SiO4OlO(0H2)	60,000	
충청북도	활석	Mg3SiO4OlO(0H2)	153,000	